



유럽연합(EU)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곽혜선*

☞ 한국의 주요 교역국인 유럽연합에의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에 따른 유럽연합의 규정 및 시행세칙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규제 기준에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

1 서론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와 aT의 농식품 분류 기준으로 유럽연합은 한국의 농식품 수출 대상 국가 중에 7번째로 규모가 큼. 2021년 對유럽연합 수출액은 3억 8,845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5% 증가하여 한국의 농식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임.
- 또한 최근 5년(2017~2021년)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특정 회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와 기술무역장벽 조치(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¹⁾에 관해 제기한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²⁾ 중 유럽연합의 조치를 대상으로 제기된 건은 각각 50건(<그림 1> 참고)과 32건(<그림 2> 참고)으로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하였음.
- 이처럼 특정무역현안으로 이의를 가장 많이 제기 받은 유럽연합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기술무역장벽 조치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시 유럽연합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변경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유럽연합은 식품 표시(Labeling)를 “소비자 식품 정보(Food Information to Consumers: FIC)” 규정을 중심으로 규제하지만, 27개 유럽연합 회원국³⁾이 FIC 규정과 별개의 기준을 자국 내에서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 연구원(hyesunk@krei.re.kr).

본고는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의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Country Report: European Union.”의 일부 내용을 번역·정리한 것임.

1)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와 기술무역장벽 조치는 자국민의 건강 및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 정보제공 등의 정책적 목적으로 정부가 특정 상품에 특정 요건을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조치이나, 기술무역장벽 조치는 식품요건(labeling) 부착 등과 같은 방법과 절차를 중심으로 상품의 외적 요소를 규제하고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는 농약, 독성 등 성분을 중심으로 상품의 내적요소를 규제하는 조치임(윤지현·장용준, 2019). 식품 라벨링을 기준으로 보면 허용되는 식품 안전에 관한 규정(건강 유해성 경고, 사용, 복용 등은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 협정의 규율 대상이며, 사이즈, 구성, 안전한 취급에 관한 규정은 기술무역장벽 조치 협정의 규율 대상임(강민지, 2016).

2) 특정무역현안(STC)이란 WTO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SPS) 또는 기술무역장벽 조치(TBT)위원회에 통보된 회원국의 조치에 대하여 다른 회원국이 해당 조치가 자국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안건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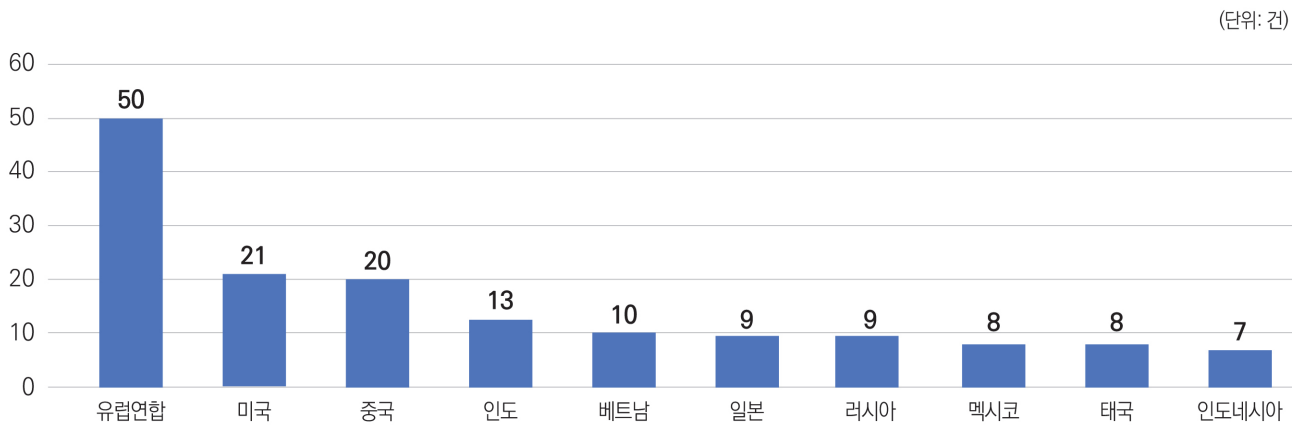
3) 유럽연합 회원국은 2022년 7월 현재 기준으로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27개 국가임(https://european-union.europa.eu/index_en).



유럽연합(EU)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 또한, 2020년 5월 20일에 유럽연합 위원회가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Farm to Fork Strategy)’을 발표함에 따라 2025년까지 유럽연합의 식품 표시 규제의 변화가 예상됨. 예를 들어, 식품 지속가능성 표시(food sustainability labeling), 동물복지 식품 표시(animal welfare labeling), 추가적인 원산지 표시(additional origin labeling), 그리고 영양소 함량 기준과 영양성분표 전면 부착 의무화(nutrient profiles and mandatory front-of-pack nutrition labeling)를 포함하는 새로운 요건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본 고에서는 유럽연합의 식품 표시(Labeling) 요건과 新식품(Novel Food)⁴⁾과 같은 기타 특정 표준을 중점으로 소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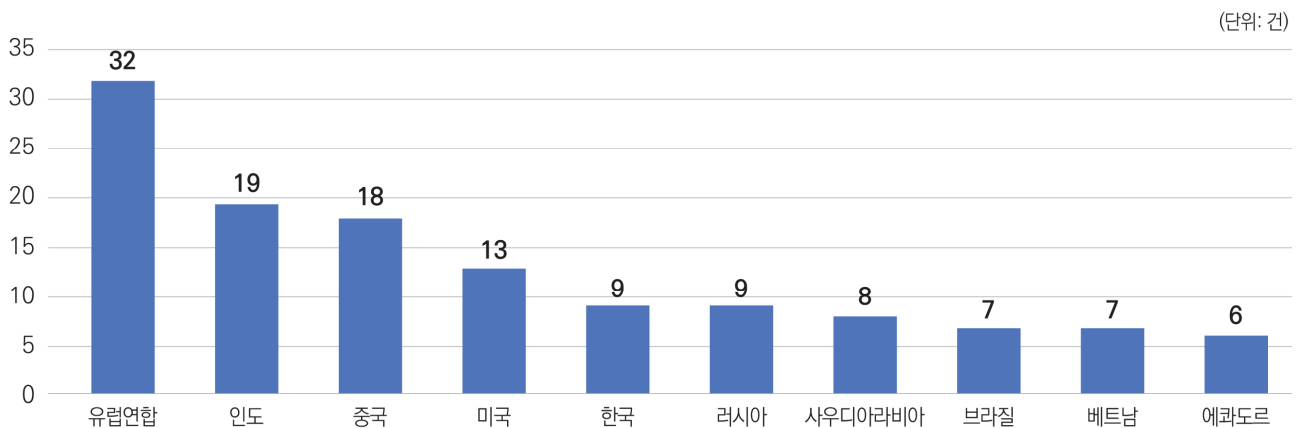
그림 1.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특정무역현안(STC) 피제기 건수(2017~2021년) |



주: 2017~2021년 중에 특정무역현안이 특정 국가의 특정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조치에 처음 제기되거나 혹은 동일 조치에 대하여 반복 제기(최후로 제기된 날짜 기준)된 횟수를 IMS ID 기준으로 집계함.

자료: WTO Trade Concerns Database 자료 재가공.

그림 2. 기술무역장벽 조치(TBT) 특정무역현안(STC) 피제기 건수(2017~2021년) |



주: 2017~2021년 중에 특정무역현안이 특정 국가의 특정 기술무역장벽 조치(TBT)에 처음 제기되거나 혹은 동일 조치에 대하여 반복 제기(최후로 제기된 날짜 기준)된 횟수를 IMS ID 기준으로 집계함.

자료: WTO Trade Concerns Database 자료 재가공

4) 新식품(Novel Food)이란 1997년 이전에 일정 수준 이상 소비되지 않은 식품으로 유럽연합의 안정성 평가 및 승인을 통하여 수입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한 제품을 의미하며 오가피, 오미자 등이 심사를 거쳐서 Novel Food로 지정되었음(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86502&menu_dept2=35&menu_dept3=75).



유럽연합(EU)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2 유럽연합 일반 식품법(General Food Laws)

2.1. 유럽연합의 조율된 입법(EU-Harmonized Legislation)

- 유럽연합 회원국의 식품 관련 법이 유럽연합 수준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럽연합 식품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품목은 개별 국가의 법을 적용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 또한, 유럽연합은 식품법을 조화시키기 위해 이중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데 수평적(horizontal) 법안은 모든 식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다루고, 수직적(vertical) 법안은 특정 식품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유럽연합에 식품을 수출할 때는 각 식품법의 규정을 충족시켜야 함. 예를 들어, 와인의 경우 식품 표시는 와인에 관한 수직적 특정 법안과 알레르기 유발 항원(allergen) 식품 표시에 관한 수평적 법안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2.2. 상호 승인(Mutual Recognition)

- 유럽연합 수준의 조율된 법이 없는 경우에는 '상호 승인'을 통해서 유럽연합 내에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야 함. 한 회원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생산·판매되는 상품은 상호 승인의 원칙하에서 다른 회원국 내에서도 판매가 허용되어야 함.
- 그러나 회원국이 수입 상품이 공중의 안전, 건강 혹은 환경에 미치는 우려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호 승인의 예외를 두고 있음. 다른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의 상호 승인에 관한 규정(Regulation 2019/515)은 상호 승인을 거부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제시하고 국가 당국의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고 있음.
- 또한 이 규정은 기업이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자사 제품이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발적 '상호 승인 신고(mutual recognition declaration)'를 도입하였음.

2.3. 식품 안전 입법(Food Safety Legislation)

- 일반 식품법 규정(General Food Law Regulation 178/2002)은 사전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포함한 일반 원칙을 규정하며, 식품 안전과 위기관리 요건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음. 유럽연합 회원국은 기업들이 유럽연합 식품법 요건을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식량 관리(food control)를 수행할 책임이 있음.



유럽연합(EU)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 조율된 식품 관리에 관한 새 규정(2017/625)이 2019년 12월 14일부터 적용되었고, 식품 사슬(Food Chain) 내에서 공중위생상의 위험이 발견되는 경우 국가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식품 및 사료 긴급경보 시스템(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 RASSF)이 운영됨.
- 유럽연합의 식품 안전법은 일반 식품법에 관한 규정, 식품 및 사료 통제에 관한 규정, 식품 및 사료 위생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며, 기존의 유럽연합 식품 규정의 개정 혹은 신규 식품 규정은 식품 안전법 체계 아래의 규정에 모두 적용됨. 2019년 6월에 일반 식품법 개정과 유럽연합의 위험 평가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규정(2019/1381)이 유럽연합의 관보에 게재되었음.
- 이 규정은 투명성을 증진하고, 연구의 독립성을 높이며,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의 관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위험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개정안은 식품 첨가물, 스모크 향미료, 식품 접촉 물질, 사료 첨가제, 식품용 효소 및 향미료. 新 식품을 포함한 농식품 산업의 분야를 규제함.

3 식품 표시(Labeling) 요건

3.1. 일반 요건

- 유럽연합의 식품 표시법인 FIC 규정(1169/2011)은 유럽연합 비회원국에서 수입된 것을 포함해서 유럽연합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포장 식품과 음료에 적용됨. '규정'의 목적은 유럽연합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규칙을 조율하기 위함이지만 FIC 규정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유럽연합의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음. FIC 규정 제39조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원산지 표시와 같은 국가적 의무 조치를 추가로 채택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 FIC 규정에서 알코올성 음료는 영양 표시와 성분 목록 제시 의무는 면제되지만, 제41조에 따라 회원국들은 유럽연합의 조율된 조항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성분 표시에 관해 자국의 규칙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유럽연합으로 농식품을 수출하는 경우는 수입자에게 개별 국가의 추가적인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 FIC 규정(1169/2011)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 제안이 2022년 사사분기로 예정되었으며, 개정은 조율된 상품 전면 영양 표시 의무, 지방, 설탕, 소금 함량이 높은 음식 홍보를 제한하기 위한 '영양소 함량 기준(nutrient profiles)'의 설정, 특정 상품에 대한 원산지 의무 표시의 확대, 유럽연합의 유통기한 표시 규칙 개정을 포함할 예정임.



유럽연합(EU)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3.1.1. 필수 정보

- FIC 규정 제9조는 식품과 음료의 라벨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의 목록을 정하고 있음. 의무 표시 사항은 1) 식품의 이름, 2) 성분 목록, 3) 부록 II에 열거된 알레르기 유발 항원(allergen), 4) 특정 성분의 양 혹은 성분의 분류, 5) 식품의 순수량(net quantity), 6) 최소 보존 기간 혹은 “소비 기한(use by date)”, 7) 특별한 저장조건 혹은 사용 조건, 8) 사업명과 식품이 판매되는 명의의 식품 사업자의 주소(유럽연합에서 설립된 식품 사업자가 아닌 경우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 9) 제26조의 규정에 합치하는 원산지 혹은 출처, 10) 설명이 없다면 적절한 섭취가 어려운 식품의 사용법 설명, 11) 알코올 함유 비중이 1.2%가 넘는 음료의 경우 부피로 표시된 알코올 도수, 12) 영양성분 표시(nutrition declaration)가 있음.

3.1.2. 식품 표시 경고

- FIC 규정(1169/2011) 부록 III은 식품 표시에 표기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항 목록을 다음과 같이 정함. 1) 가스 포장을 통해서 보존 기간이 늘어난 식품, 2) 식품 첨가물 규제(1333/2008)에 의해 승인받은 첨가당과 감미료를 포함한 식품, 3) 동 규제로 승인받은 아스파탐을 포함한 식품, 4) 동 규제로 승인받은 10% 이상 첨가된 폴리올(polyols)을 포함한 식품, 5) 감초(licorice)를 포함한 과자 제품과 음료, 6) 150mg/l 이상의 카페인을 포함한 음료와 카페인이 첨가된 식품, 6) 피토스테롤(phytosterol), 피토스테롤 에스테르(phytosterol ester), 피토스탄올(phytostanols), 혹은 피토스탄올 에스테르(phytostanol ester)가 첨가된 식품 혹은 식자재 등. 또한 소비자가 음식으로 착각할 수 있는 포장의 모든 먹을 수 없는 부분은 “먹지 마시오(DO NOT EAT).”라고 표시되어야 함.

3.1.3. 최소 글자 크기

- FIC 규정(1169/2011)은 식품과 음료의 식품 표시에 필수적으로 표기되어야 하는 정보의 최소 글자 크기는 소문자 x자 기준 높이 1.2mm로 정하고 있으며 식품 포장이나 용기의 가장 넓은 면의 넓이가 80cm² 이하인 경우 최소 글자 크기는 0.9mm로 줄어듬. 포장의 인쇄가 가능한 면이 25cm² 이하인 경우에는 영양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포장이 10cm²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양성분 표시나 성분 목록을 표기할 필요가 없음.

3.1.4. 언어 요건

- FIC 규정(1169/2011) 제15조에 따르면 의무적 표시 정보는 “식품이 판매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함. 실제 적용되는 방식을 보면, ‘유럽연합 회원국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언어를 의미함. 유럽연합 회원국은 어떤 정보가 하나의 유럽연합 회원국의 언어 또는 여러 회원국의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는지 특정할



유럽연합(EU)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수 있고, 유럽연합으로 농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새로운 식품 표시 규칙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무적 표시 정보의 번역이 정확해야 함.

3.1.5. 성분 목록

- “성분(ingredients)”이라는 단어가 성분 목록 앞에 반드시 표기하고 모든 성분은 각 성분의 특정한 이름으로 지명되어야 하며 중량에 따라서 내림차순으로 나열되어야 함. 조작된 나노물질(nanomaterials)의 형태로 존재하는 성분은 성분 목록에서 성분명 다음에 “nano”라는 단어를 괄호 안에 표시해야 함. FIC 규정(1169/2011) 부록 VII은 성분 목록에 표시되는 성분과 성분의 범주 표시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식물성 기름과 지방의 원료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3.1.6. 알레르기 유발 항원(allergen) 표시

- FIC 규정(1169/2011) 제21조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상품이나 물질은 성분 목록에 동 규정 부록 II에 실린 물질 혹은 상품명을 참고하여 표시되어야 함. 이러한 물질 혹은 상품의 이름은 다른 성분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굵은 활자체나 배경색과 같은 조판을 통해서 강조되어야 함 (예시: “두부”(콩)).
- 성분 목록이 있는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 항원의 존재를 반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경고나 “X를 포함함”과 같은 문구를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와인과 같은 성분 목록이 필요하지 않은 상품에는 알레르기 유발 항원은 단어 “포함함(contains)” 다음에 동 규정 부록II에 명시된 물질 혹은 성분의 이름을 사용하여 표시되어야 함. 또한, 알레르기 유발 항원 표시는 모든 알코올음료에 최소 글자 크기 요건을 지켜서 의무적으로 표시되어야 함.

3.1.7. 품질 유지기한(minimum durability)

- FIC 규정(1169/2011) 부록 X에 따르면 소비기한은 미리 포장된 개별 부분에 표시되어야 하며, 냉동고기, 가공 냉동 고기, 미가공 냉동 수산물 제품에는 “~에 냉동된(frozen on)”이란 단어 다음에 품질 유지기한과 냉동일을 표시하여야 함.

3.1.8. 성분 중량 표기(Quantitative Ingredients Declaration: QUID)

- FIC 규정(1169/2011) 제 2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분의 중량이나 성분의 분류 표시를 해야 함. 1) 식품의 이름에 성분이나 성분의 분류가 드러날 때 혹은 소비자가 식품의 이름과 성분을 연관해 인식하는 경우, 2) 식품 표시에 글, 그림, 혹은 도표로 성분이나 성분의 분류가 강조된 경우, 3) 성분 혹은 성분의 분류가 해당 식품의 특정하고 다른 제품과 구분하는데 필수적인 경우



유럽연합(EU)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성분 중량 표기가 필수적임. 백분율로 표시되는 성분 중량 표기는 식품의 이름 바로 옆에 혹은 성분 목록에 드러나야 함.

3.1.9. 원산지 표시

- FIC 규정(1169/2011) 채택 전에도 꿀, 과일, 채소, 올리브유, 수산 및 양식업 제품, 소고기에는 원산지 표시가 의무였으나, FIC 규정 도입 후 원산지 표시 의무는 신선, 냉장 및 냉동 돼지고기, 양고기, 염소 고기, 가금류까지 확대되었음. 동 규정 제26조에 따르면 1) 원산지 혹은 출처 표시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를 오해하게 할 여지가 있는 경우, 2) 신선, 냉장 및 냉동 돼지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가금류의 고기의 경우 원산지 표시 의무가 적용됨.
- 2018년 5월 29일에 유럽 위원회는 식품 표시에 특정 원산지가 제시되거나 시각적으로 암시되지만, 주성분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에는 이중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는 실행세칙(2018/775)을 발표함.
- 식품에 제시된 원산지 혹은 출처와 원재료의 원산지 혹은 출처가 다른 경우 원재료의 원산지에 관해서 실행세칙 제2조에 제시된 대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여야 함. “(원재료 이름)은 (식품의 원산지 혹은 출처)에서 생산된 것이 아님” 또는 앞의 문구와 같은 의미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비슷한 문구를 사용해야 하며, 동 세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2020년 1월 30일에는 유럽 위원회가 관찰관청뿐만 아니라 식품 사슬의 행위자들이 주원료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FIC 규정(1169/2011)의 조항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조항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시(C/2020/48)를 채택했음(예를 들어, 땅콩버터 병에 “미국산(made in the USA)” 혹은 미국 국기를 표시했으나, 땅콩이 다른 국기산이라면 동 규정(1169/2011)이 적용됨).
- 2020년 5월 20일에 유럽연합 위원회가 발표한 유럽연합의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EU Farm to Fork Strategy: F2F)은 유럽연합의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소비자의 현명한 결정을 위한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의 하나로 유럽연합 위원회는 2022년 내로 특정 제품에 대한 원산지 혹은 출처 의무 표시 확대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음.

3.1.10. 알코올음료

- 알코올 함유 비중이 1.2%가 넘는 음료(와인 제외)는 부피로 표시된 실제 알코올 도수가 FIC 규정(1169/2011) 부록 XIII에 합치하도록 표시되어야 함. 알코올 도수는 최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의



유럽연합(EU)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숫자 다음에 “%vol.”와 함께 표시되어야 함. 알코올 도수는 상품명과 순수량(net quantity)과 함께 같은 가시범위에 표시되어야 함. 와인의 경우 알코올 도수 표기를 위한 규칙이 특정 입법에 제시되어 있으며, 단일 공동시장 제도(Single Common Market Organization) 규정(1308/2013)이 와인 관련 규칙의 기반이 됨. 알코올 도수가 1.2% vol. 을 넘는 알코올음료는 영양 표시와 성분 목록을 제시하는 의무에서 면제됨.

3.1.11. 영양성분 표시

- FIC 규정(1169/2011)에 따라 영양성분 표시는 2016년 12월 13일부터 의무화됨. 표시할 공간이 충분하면 영양성분 표시는 숫자의 열을 맞춰서 표 형식으로 나타내야 하고,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줄글 형태로 나타내어야 함. 의무 영양성분 표시의 모든 요소는 식품 라벨이나 포장 상의 동일한 가시범위에 나타나야 함.
- 영양성분 표시에는 열량(KJ와 Kcal로 표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소금의 양을 여기에 나열한 순서대로 100g당 혹은 100밀리리터당 그램, 밀리그램, 마이크로그램으로 나타내야 함. 염분은 “나트륨(sodium)”이 아니라 “소금(salt)”으로 표시되어야 하나, 염분이 오직 자연발생적인 나트륨에 의한 것이라는 문구를 영양성분 표시에 아주 근접한 위치에 나타낼 수 있음.
- FIC 규정 제35조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추가적인 형태의 영양성분 표시나 제시를 추천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포장 전면에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추가적인 제도는 8개 회원국(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이 채택하였음.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의 일환으로 유럽연합 위원회가 조율된 포장 전면 영양 표시 의무를 2022년 말까지 FIC 규정 개정의 일부로 제안할 것을 발표하였음. 이 결정은 추가적 형태의 영양성분 표시에 관한 보고서에 기반하였는데, 동 보고서는 포장 전면 영양표시는 소비자가 건강을 생각한 식품을 선택하도록 도울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3.1.12. 스티커(Sticker)의 사용

- FIC 규정(1169/2011)에는 의무 식품 표시 정보를 제품에 스티커로 붙여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조항이 없으나, 유럽 위원회는 FIC 규정 적용에 관한 질의응답에서 스티커의 사용과 관련하여 “식품 표시는 의무 식품 표시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해칠 수 있으니 쉽게 제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함. 일부 회원국에서는 스티커로 식품 표시를 할 수 있고 일부 회원국에서는 스티커 식품 표시가 불가능하므로 식품을 수출할 때는 미리 확인이 필요.



유럽연합(EU)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3.1.13. 새로운 FIC 규칙 준수를 위한 체크리스트

- 2020년 12월에 유럽연합 위원회는 식품 표시 정보 시스템(Food Labelling Information System: FLIS)을 도입하였는데, 사용자가 특정 식품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유럽연합에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식품 표시가(〈표 2〉 참고) 24개의 유럽연합 회원국 언어로 제공함.

표 2. 유럽연합 FIC 규정 준수를 위한 체크리스트

구분	내용
식품 표시 (Food Labels)	언어/특정 회원국 요건
	최소 글자 크기
	식품의 이름(재냉동, 훈제, 가루 상태와 같은 특정한 처리를 포함)
	경고 사용 방법
알레르기 유발 항원 표시 (Allergen Labeling)	FIC 규정 부록 II에 열거된 알레르기 유발 항원은 반드시 표시
	성분 목록이 표시된 경우, 알레르기 유발 항원 표시 상자는 사용 금지
	각 알레르기 유발 항원은 성분 목록에서 강조되어 표시
성분 목록 (Ingredients List)	성분 목록이 없는 경우에는 "포함함(contains)+알레르기 유발 항원의 이름(name of allergen)"으로 표시
	제목은 "성분(ingredients)"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포함(강조 표시 금지)
	모든 성분은 중량에 따라서 내림차순으로 표시
	조작된 나노물질(engineered nanomaterials)이 포함된 경우, 괄호 안에 "nano" 표시
	특별히 강조된 성분은 성분 중량 표기(QUID)
	식물성 기름 혹은 지방의 원료는 반드시 표기
	육류 제품에 첨가된 단백질은 반드시 표시
	식품 표시 어느 부분에 기한이 표시되었는지 언급
품질유지기한 (Date of Minimum Durability)	FIC 규정 부록 X에 열거된 사항
	상하기 쉬운 제품과 개별 포장된 각 부분에 "사용기한(use by)" 날짜 표시/ 보관법 표시
	다른 제품에는 "유통기한(best before/best before end)" 표시
	냉동식품에는 품질 유지기한(durability)과 "냉동된(frozen on)" 날짜 표시
알코올 도수 (Alcoholic Strength)	FIC 규정 부록 XIII에 열거된 사항
	알코올 함유 비중이 1.2%가 넘는 음료의 실제 알코올 도수(부피)는 반드시 "알코올" 혹은 축약어 "alc."와 X % vol.으로 표시
	상품명, 순수량(net quantity), 알코올 도수는 같은 가시범위에 표시
원산지 (Country of Origin)	원산지 표시가 없다면 소비자를 오해하게 할 여지가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원산지 표시
	양고기, 염소 고기, 가금류 고기, 돼지고기에는 의무적으로 원산지 표시
	주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한다면 소비자를 오해하게 할 여지가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 영양 표시 (Mandatory Nutrition Declarations)	FIC 규정 부록 XV에 열거된 사항
	표 형식으로 제시(표 형식을 할 공간이 부족할 경우 줄글로 제시)
	100g 또는 100mL당 표시
	KJ와 Kcal로 열량 표시 지방, 포화지방산, 탄수화물, 당, 단백질, 소금(나트륨 아님)의 순서대로 성분 표시

자료: USDA(2021).



유럽연합(EU)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3.2. 기타 요건

- 기타 요건으로서 건강 관련 표시(Health Claim)의 경우 “digestive biscuits”와 “cough drop”과 같은 포괄적인 어구(general descriptors)는 유럽 식품안전청(EFSA)에 의해 과학적으로 평가받은 적이 없지만,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암시하기 때문에 규정(1994/2006)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있음. 2020년 5월 20일 유럽 위원회는 소금, 당분,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의 홍보를 제한하기 위해 2022년 말 이전 규정(1924/2006)에 따른 영양기준(nutrient profile)을 수립할 것을 발표했다. 또한 유기농 식품 표시의 경우 2018년 5월에 유럽연합에서 채택한 새로운 유기농 식품 규제가 2022년 발효되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함.

4 기타 특정 표준

4.1. 新 식품(Novel Foods)

-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新 식품에 관한 기본 규정(2015/2238)은 新 식품을 1997년 5월 15일 이전에 유럽연합 내에서 상당한 정도로 소비된 적이 없고 동 규정의 제3조에 열거된 적어도 하나의 분류에 해당하는 식품(예시: 크랜베리 추출물 가루)으로 정의함. 新 식품은 유럽연합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온 전통 식품(유럽연합 소비자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식품)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산기술의 결과로 나타난 새롭게 개발된 혁신적인 식품일 수도 있음. 新 식품 규정은 유전자변형식품, 첨가물, 효소, 조미료, 추출용매에는 적용되지 않음.
- 新 식품은 시장 출하 전에 승인이 필요함. 전자 제출 시스템(e-submission system)을 통해서 유럽연합 위원회에 新 식품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위원회는 유럽 식품안전청(EFSA)에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유럽 위원회 실행세칙(2017/2469)은 新 식품 승인 신청을 위한 행정적 및 과학적 요건을 제시함.
- 또한, 유럽 위원회 실행세칙(2017/2470)은 유럽연합 내에서 승인을 받은 新 식품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데, 목록은 설명서, 사용 조건, 추가적인 식품 표시 요건, 사후 모니터링 요건도 제시하고 있음. 실행세칙은 새로운 新 식품이 승인을 받을 때마다 개정됨.
- 식품 사업자들은 유럽연합에서 판매하려는 식품이 新 식품인지 아닌지 입증할 책임이 있어 주의가 필요함. 조작된 나노물질은 식품에 사용되기 전에 新 식품 승인을 받아야 함. 또한, 생물 복제에 관한 개별 입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생물 복제로 생산된 식품은 新 식품 규제의 범위에 해당함. 新 식



유럽연합(EU)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식품 규정(2015/2283)은 안전한 식품 섭취의 역사를 입증한 비유럽연합 국가의 전통 식품을 위한 신속한 통지와 간소화된 평가 절차를 도입하고 있음. 新 식품으로 간주하는 비유럽연합 국가의 식품이 만약 농산물로부터 얻어진다면 “전통 식품”의 자격이 있음. 예를 들어, 비유럽연합 국가에서는 일반적인 음식으로 간주하나 유럽연합 내에서는 1997년 5월 15일 이전에 소비된 적이 없는 과일 주스는 “전통 식품”의 자격을 얻을 수 있음.

4.2. 강화식품(Fortified Foods)

-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 규정(1995/2006)은 유럽연합 전역에 적용되는 비타민과 무기질이나 약초 추출물과 같은 다른 물질을 식품에 추가하는 것을 규제하는 틀을 정립했음. 동 규정은 식품에 추가될 수 있는 비타민과 무기질의 종류와 최대·최소 기준을 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유럽연합 내에서 조율된 비타민과 무기질의 식품 함유 최대·최소 허용 기준을 세우기 위한 유럽 위원회의 제안은 이미 10년이 넘게 지연되고 있음.
- 따라서 유럽연합 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비타민과 무기질의 식품 최대 함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 비타민과 무기질은 FIC 규정(1169/2011) 부록Ⅲ에 제시된 “필요 섭취량(reference intake)”의 백분율로 표시되어야 하며, 규정(1925/2006)의 부록에 포함되지 않는 비타민과 무기질의 사용은 금지됨.

4.3. 식이요법 식품(Dietetic Foods)

- 규정(609/2013)은 특정한 영양적 용도가 있는 식품을 위한 구성 및 식품 표시 규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영아용 조제분유(infant formula), 2단계 분유(follow-on formula), 가공 곡물 식품(Process cereal-based food), 이유식(baby food), 특별한 의료용 목적을 위한 식품, 체중 조절을 위한 식사 대체 식품이 적용 범위에 해당함. ‘글루텐을 함유하지 않은 식품(gluten-free foods)’과 같이 규정(609/2013)을 적용받지 않는 식이요법 식품은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고 식품의 비타민과 무기질 함유와 관련된 FIC 규정(1169/2011), 규정(1925/2006)과 영양 강조 표시와 건강 관련 표시에 관한 규정(1924/2006)을 충족시켜야 함.



유럽연합(EU)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5 시사점

- 2021년 기준 한국의 농식품 수출 대상 중 7번째로 큰 규모(수출액 기준)이며 전년 대비 한국의 수출액이 20% 이상 증가한 유럽연합은 한국의 주요 농식품 수출 시장임. 또한 유럽연합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와 기술무역장벽 조치(TBT)는 WTO 회원국이 각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특정 국가의 특정 조치가 무역 갈등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논의되는 특정무역협안(STC)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2020년 5월 20일 유럽연합 위원회가 발표한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은 유럽연합 소비자들이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 요건이 강화되고 있으며, 2022년 내로 원산지 혹은 출처 의무 표시가 확대될 예정임. 또한 新 식품의 경우에는 新 식품 입증책임을 유럽연합에서 식품을 판매하려는 식품 사업자들이 지고 있고 新 식품은 시장 출하 전에 전자 제출 시스템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함.
- 따라서 한국이 유럽연합에 농식품을 수출할 때 유럽연합의 수입 농식품 규제와 표준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보 제공과 행정적 지원이 필수적임. 예를 들어, 한국의 농식품 업체가 유럽연합에 한국이 지금까지 수출한 적이 없는 식품을 수출할 때, 新 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파악하고 新 식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유럽연합은 ‘新식품 일람표(Novel Food Catalogue)’를 운영하여 승인된 新 식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식품 수출업체는 수출하고자 하는 식품이 新 식품으로 승인받았는지 미리 검토해 볼 수 있음.
- 이처럼 新식품 정보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를 정부 차원에서 제시한다면 유럽연합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농식품 업체가 비관세장벽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또한 유럽연합에 수출하고자 하는 식품이 “전통 식품”으로 인정받을 때는 비교적 간단한 新 식품 승인 절차를 적용할 수 있음. 따라서 수출하고자 하는 식품이 전통 식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역사적 안전성을 증명하고 상당수의 사람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임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新 식품 규정뿐만 아니라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Farm to Fork Strategy)의 정책 목표에 따라 유럽연합의 식품 관련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음. 예를 들어, 영양성분표 전면 부착의 의무화와 원산지 표시 관련 개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 농식품을 수출할 경우 충족시켜야 하는 요건이 될 것임. 따라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에 따른 유럽연합의 규정 및 시행세칙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규제 기준에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유럽연합(EU)의 농식품 수입 규정과 표준

참고문헌

- 강민지. 2016. 『WTO SPS 분쟁 사례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윤지현, 장용준. (2019). TBT와 SPS 조치가 할랄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국제통상연구, 24(2), 1-22.
- USDA. 2021.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Country Report: European Union*.
USDA. <https://www.fas.usda.gov/data/european-union-food-and-agricultural-import-regulations-and-standards-country-report> (검색일: 2022. 6. 20.)

〈참고사이트〉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검색일: 2022. 3. 20.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 “EU 신식품(Novel Food) 개정 시행(2018.1.1.).”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86502&menu_dept2=35&menu_dept3=75〉. 검색일: 2022. 7. 12.
- WTO Trade Concerns Database. 〈<https://tradeconcerns.wto.org/en>〉. 검색일: 2022. 7. 6.
- European Union. 〈https://european-union.europa.eu/index_en〉. 검색일: 2022. 7. 6.